|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계 | 부장 | 교감 | |  |  |  | | |
|  | |
| **결 석 신 고 서 (출석인정)** | |
|  | **학 년 : 제 {1}학년 {2}반 {3}번** |
|  | **성 명 : {성명}** |
| **위 학생은 {결석사유}(으)로 인하여 {결석시작일}부터 {결석종료일}까지 {결석일수}일간 결석하였기에 보호자 연서로 이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
| **{결석확인일}** | |
| **학 생 : \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 |
| **보호자 : \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 |
| **확 인 서** | |
|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결석확인일}** | |
| **담임교사 : {담임교사 성명} (인)** | |
| **온양한올고등학교장 귀하** | |
| **출석 인정 결석에 해당 하는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공적의무(병역관계 등) 또는 공권력의 행사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경조사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